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김기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1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5일

발 의 자 :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진수,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서울시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가입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보험계약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험계약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금액의 산정과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6조(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3조 가입대상, 제4조 보험계약 등의 사항에 따라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나. 전제

- 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12세 미만
-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에 의거 향후 안전보험 시행 시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후유장애 보험항목에 대해서만 보장
- 3) 5년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대상 인구 변동 없는 것으로 함
- 4) 연간 보험요율 증가분 반영(110%)

다. 추계기간

시행일로부터 추계기간 5년으로 함(2020~2024년)

라. 방법

- 1) 인구기준 : 2019년 4월 31일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기준 등록외국인: 총 10,051,649명
- 2) 보장내용 및 금액: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약관 기준 ※첨부파일
- 3) 서울특별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제도팀 제출자료 참고하여 작성

3.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방법: 보험가입금액 x 보험요율 = 1인당 보험료
 1인당 보험료 x 대상 인원(명) = 총 보험료
- 보험 담보내역 :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 보장금액 : 10,000,000원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료: 시민 1인당 연간 보험료(131원) X 대상 인구수(10,051,649명) = 1,316,806,880원
- ※ 시민안전보험금 산출내역: 2019년 4월31일 행정안전부 인구통계기준 10,051,649명
- ※ 참고 1) 안전총괄과 안전제도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안내서

○ 총 비용 ≒ 8,039,237,000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민안전보험 운영(제3조, 제4조)	1,316,806	1,448,487	1,593,336	1,752,669	1,927,936	8,039,237
	소계(b)	1,316,806	1,448,487	1,593,336	1,752,669	1,927,936	8,039,237
□ 총 비용(b-a)		1,316,806	1,448,487	1,593,336	1,752,669	1,927,936	8,039,237

4. 덧붙이는 의견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이수연

☎ 02-2180-7945

e-mail : sooyeon7@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서울특별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8,843,161천원

나.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료 ≙ 8,843,161천원

$$\begin{aligned} \text{○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료} &= \sum_{i=1}^5 (\text{연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료})_i \\ i &= \text{비용추계 연차(2020년 ~ 2024년)} \end{aligned}$$

연간비용 = 시민 1인당 연간보험료(131원) X 대상 인구수(10,051,649명)
X 보험료 인상률(110%)

※ 단, 2021년 이후 연간 보험료 인상률(110%) 반영

※ 2020년 연간 보험료 서울시 안전총괄과 안전제도팀 제출자료 참고